

여자대학생 성희롱 척도의 타당화 연구*

이 영 은[†]

우송정보대학

최근 이영은과 김영희(2008)에 의해 여자대학생 성희롱 척도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충분한 측정학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용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신뢰도분석 뿐 아니라 다양한 타당화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여자대학생 성희롱 척도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할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를 위해 준거관련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분석하였다. 준거관련타당도는 외적준거로 성희롱 경험 유무(24번 문항)와 성적불쾌감정도를 통해 살펴 본 결과 준거관련타당도가 일관성 있게 지지됨을 나타내었고, 수렴타당도는 성희롱 척도와 부정적 정서 및 성희롱 허용태도와의 관련성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두 척도 모두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상관계수가 높지 않은 편으로 수렴타당도 검증에 다소 제한점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을 시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전반적 부합지수가 적절한 수준의 값을 보여 구성타당도가 지지되었음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은 타당화 검증을 통해 여자대학생 성희롱 척도가 타당한 도구임을 입증하였으며, 그 유용성과 일반화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주요어 : 여자대학생, 성희롱 척도, 준거관련타당도, 수렴타당도, 구성타당도

* 본 논문은 이영은의 2007년 8월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바탕으로 한 것임.

† 교신저자 : 이영은, 우송정보대학,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226-2

Tel : 042-629-6151, E-mail : yeun7234@hanmail.net

우리나라의 경우 성희롱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서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동안 관행처럼 여기며 잠복되어 오던 것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서울대 교수의 여조교 성희롱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성희롱이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남녀차별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1999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데도 전초적 역할을 하였다. 현행법 중 성희롱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여성발전 기본법(2005. 12. 29 최종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2005. 7. 29 최종개정), 남녀고용평등법(2005. 12. 30 최종개정)이다. 이 중 본 연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인권위원회법의 정의를 살펴보면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5항).

그 동안 이러한 법적인 제정 및 해석 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성희롱을 구성하는 행동적 요소들을 분류하고 범주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 이에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 국내 성희롱 유형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으며 그에 사용된 측정도구에 대해 유목화를 시도하였다. 대체로 그 준거가 일정하지 않아 분류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성희롱에 관한 이론이나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에 맞게 문항을 제작한 경우(김양희, 1995; 노충래, 2002), 둘째, 외국의 성희롱 측정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한 것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성희롱 유형을 재분류하거나 그대로 사용한 경우(공미혜, 1997; 이해은, 1998; 신성자, 1993; 이정은, 1994), 셋째, 성희롱 형태나 특성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제시한 여성민우회(1998)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서’나 남녀평등고용법 시행규칙의 ‘성희롱 예시문’ 등을 그대로 척도로 사용한 경우(김경신 외 1999; 전영실 1999; 여성부, 2002; 정향미 2004; 홍경옥, 2005)로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성희롱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사용된 측정도구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첫째,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맞게 성희롱 문항을 제작한 경우를 살펴보면 김양희(1995)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경험유무와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11문항을 개발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내용은 이성(부부)관계 얘기, 능청스럽고 야한농담, 성관계 제안 등이 포함 되어 있다. 또한 노충래(2002)도 청소년의 성희롱 피해 및 가해 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만지는 행위, 스치는 행위, 옷을 벗는 행위 등의 11개 문항을 제작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이론이나 정보를 바탕으로 임의로 제작하였으므로 성희롱 행위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편이며 성희롱 개념을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둘째, 외국의 성희롱 측정도구를 번안하거나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경우는 주로 성희롱 경험이나 피해와 영향 등의 연구에 사용되었는데 신성자(1993)는 직장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Fitzgerald 등(1988)이 개발한 성희롱 척도 SEQ(Sexual Expiience Questionnaire: 이하

SEQ를 번안하여 사용하였고, 이정은(1994)도 Fitzgerald 등(1988)이 개발한 SEQ를 사용하여 여성공무원들의 성희롱 유형을 조사하였다. 여자대학생들의 성희롱 경험과 의식을 조사한 공미혜(1997) 역시 우리 실정에 맞게 SEQ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는데 성차별, 성적유혹, 성적보상행위, 성적 강요 행위, 성추행 등 5 유형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으며, 김혜은(1998)은 SEQ 원칙도의 5유형을 일반적 유형, 유혹적 유형, 성폭력 등 3개의 유형으로 재구조화하여 사용하였다. 이 밖에도 김정만·차석빈(1994)과 장필화(1994) 등은 EEOC의 성희롱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성희롱 유형을 분류하여 사용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성희롱 측정시 외국문헌을 번안하여 사용한 연구들은 살펴보면 거의 성희롱 관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연구되었으며, 대부분 Till(1980)이 유목화하고 Fitzgerald 등(1988)에 의해 체계화 된 성희롱척도 SEQ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연구에서 유형의 명칭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명명하기도 하였으나, 원칙도의 개념과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SEQ의 1요인 Gender Harassment에 대한 명명에 있어 신성자(1993)의 경우 ‘사회·문화적 유형’이라고 칭하였고 이정은(1994)과 김혜은(1998)은 ‘일반적 성희롱’이라고 기술하여 자칫 다른 유형으로 혼동하기 쉬우나 실상은 같은 범주로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우리나라 성희롱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이론적 기반을 축적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 문화적 특성이 배제된 채 사용되어 우리 고유의 성에 관한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사회적·문화적 동질성을 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화적

이질성을 수반하는 문항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신뢰도와 타당도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결국, 문화와 대상이 달라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성희롱 척도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한국여성민우회(1998)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 지침’과 남녀평등고용법 시행규칙의 ‘성희롱 예시문’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일정한 기준으로 성희롱을 범주화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먼저 한국여성민우회(1998)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 지침’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성희롱을 눈으로 하는 성희롱, 말로 하는 성희롱, 몸으로 하는 성희롱,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성희롱, 성역할의 기반한 성희롱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성역할에 기반한 성희롱에 포함되는 사무실이나 기타장소에서 청소나 잔심부름 등을 강요하는 행위 등은 현행법상 성적인 함의를 가지는 언동이 아니므로 성희롱으로 간주 되지 않는 실정이다. 성희롱 유형을 유목화 것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남녀평등고용법 시행규칙의 ‘성희롱 예시문’이다. 특히 이것은 법적인 공신력을 가지므로 지금까지 성희롱 예방 교육과 성희롱 판단의 기준이 되어 왔으며 성희롱 관련 실태조사에서도 널리 사용되어 왔다. 남녀평등고용법 시행규칙의 ‘성희롱 예시문’은 성희롱에 포함되는 성적 언동을 예시한 것으로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또한 그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나 행동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1개의 하위유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표적인 성희롱 사례를 단순 범주화한 것으로 본래의 성희롱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시 말해 11항목의 예시문을

적용하여 성희롱을 측정할 경우 위협적이고 억압적인 근로(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환경형 성희롱은 측정할 수 있으나, 성적 행위에 대한 협조를 조건으로 근로환경 및 교육적 이익을 부여하는 조건형 성희롱에 관한 항목이 전혀 제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민우회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이나 남녀평등고용법 시행규칙의 ‘성희롱 예시문’은 우리나라 문화를 고려하고 일정부분 성희롱 근거를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상과 같은 한계점을 발견 할 수 있으며 또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받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이영은과 김영희(2008)는 국내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척도를 개발하였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성희롱 개념적 영역을 밝히고 척도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교육현장과 직장내 성희롱 척도가 각각 개발되었고, 그에 따른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성희롱 관련 법령을 강화시켜 온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법령은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성희롱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시점에 이영은 등(2008)의 연구는 기존의 성희롱 측정도구에 비해 우리나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고 일련의 절차를 거쳐 성희롱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최근 성희롱 문제에 대한 법령이나 정부차원의 행정지도가 강화되고 있다. 현재 성희롱을 다루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여성발전기본법 양법 모두 사업주, 공공기관의장 및 사용자에게 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의 의무를 부과하고 실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2005)도 학교의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원징계기

준을 강화하였고,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였으며, 성희롱 예방 문제에 대한 교육 인적자원부의 지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일선 대학들은 성희롱 고충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성희롱 관련학칙이나 규정을 제·개정하고 하고 있으며, 또한 대학에서는 범죄행위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모든 언행에 대해 규제하고 교직원 및 학생들 간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 그 중 선행연구에서는 성희롱 피해자 전형은 없으나 대학사회에서 성희롱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라고 밝히고 있으며(공미혜, 1997; 이나영, 1999; 정향미, 2004), 같은 피해를 당하더라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척도개발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영은 등(2008)의 여자대학생 성희롱 척도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예비연구로 우선 문헌 조사와 관련법 고찰, 국내·외에서 연구되어 온 성희롱 유형 분류를 살펴보고 성희롱 구성 개념을 구축하였다. 이어 구성개념과 개방적 질문지를 토대로 성희롱 형태와 범위를 탐색한 후 관련전문가 5인에 의해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1차 척도개발을 위해 2개시(도) 4개 대학 여자대학생 251명을 대상으로 문항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요인을 확인하였으며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이어 2차 척도개발 연구는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전국 표집단위로 이루어졌으며 전국 7개시(도) 12개 대학의 여자대학생 64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5요인 23개 문항을 확정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

을 통해 개발된 척도의 요인구조가 안정적인 을 확인하였다. 내적일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신뢰로운 도구임을 보여주었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1요인은 ‘성차에 의한 희롱’으로 성별에 따른 성희롱을 반영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요인은 ‘성적강요’로 직접적인 성관계 요구나 성적행위에 대한 희유 등을 포함하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요인은 ‘덧가성 성적강요’로 처우나 보상 또는 불이익을 조건으로 하는 성희롱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요인은 ‘회식 자리 성희롱’으로 회식자리에서 흔히 발생하는 성희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5요인은 ‘원치 않은 성적 관심’으로 원치 않는 성적 관심 대상이 되어 불쾌감을 주는 6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여자대학생 성희롱 척도가 개발되었으나 충분한 측정학적 검토가 진행되지 않은 채 사용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신뢰도분석 뿐 아니라 다양한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져 그 유용성과 일반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몇몇 타당도 검증을 통해 여자대학생 성희롱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준거관련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살펴보았다. 준거관련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 검증을 위해 성희롱 질문지 마지막 문항에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는 문항을 추가로 삽입하여 척도와 관련된 성희롱을 어느 정도 추론하는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의 성적 불쾌감이 발생되어야 하므로 성적불쾌감과 관계로 검토하였다.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검증을 위해서는 개발된 성희롱 척도와 성희롱 허용태도 및 부정적 정서와 상관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최종 결정된 연구모형이 다른 표본에도 잘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여자대학생 성희롱 척도의 준거관련타당도와 수렴타당도 및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충남, 대전지역의 6개 대학에 재학 중인 여자대학생 2, 3, 4학년 59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준거관련타당도의 검증 대상은 다르게 적용되었으며 척도개발 당시 연구에 참여한 전국단위 7개시(도) 4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1학년 여자대학생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성희롱 질문지에 ‘지난 12개월 동안 발생한 성희롱’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성희롱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진정을 기각하여 구제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측정도구

여자 대학생 성희롱 척도

이영은 등(2008)이 개발한 것으로 2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1: 전혀없음, 2: 드물게-한두 번 정도-, 3: 가끔, 4: 자주, 5: 매우 자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희롱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해석한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1요

인 '성차에 의한 희롱(gender harassment)'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성(gender)차에 기인한 말이나 행위로부터 불쾌한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하고, 2요인 '성적강요'는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성관계 및 성적행위에 대한 희유나 요구를 받은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3요인 '덧가성 성적강요'는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행위에 대한 처우를 조건으로 직, 간접적으로 성적인 강요를 많이 받은 것을 의미하며 4요인 '희식자리 성희롱'은 점수가 높을수록 희식자리에서 불쾌한 성적인 강요행위를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5요인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타인으로부터 신체적 접촉 등 성적 관심 대상이 되어 불쾌감을 많이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8이며 검사 재검사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3이다.

정서

정서는 Watson, Clark와 Tellegen(1988)의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PANAS)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 10개와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평소 느끼는 자신의 기분을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희롱과 관련성이 높은 부정적 정서 10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8이다.

성희롱 허용태도

성희롱 허용태도는 Mazer와 Percival(1989)의 Sexual Harrassment Attitude Scale(SHAS)을 변안

하여 사용하였으며 이것은 성희롱의 허용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1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를 기준으로 내용 전달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여성부의 성희롱 실태조사(2002)에서 사용하였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참고하여 일부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성희롱 허용정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10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희롱에 대한 허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9로 나타났다.

성희롱 경험 정도

Fitzgerald 등(1995)은 성희롱 질문지 개발 당시 성희롱 경험 유무를 묻는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는 문항을 외적준거로 사용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질문지 마지막 문항에 제시하여 준거관련타당도를 알아보는데 사용하였다.

성적 불쾌감 정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성적 불쾌감 측정도구는 성희롱 관련법을 준거로 본 연구자가 제작하였으며, 성희롱을 경험에 여부에 따라 '그와 같은 상황에 불쾌감을 어느 정도 느꼈습니까?'라 물었으며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느끼지 않음'에서 '매우 많이 느낌' 순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9이다.

결 과

준거관련타당도

여자대학생 성희롱 척도의 준거관련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희롱 경험 유·무(24번 문항)와 성적불쾌감 정도를 외적준거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성희롱 척도와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24번 문항의 상관을 살펴보면 5요인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r=.26 \sim .41, p<.001$)을 나타내었으며 이것은 모든 문항이 성희롱 행위를 잘 반영을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성희롱 경험과 그에 따른 성적 불쾌감 사이의 상관을 살펴보면 $r=.48 \sim .77$ 의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으며, 또한 모두 유의하게($p<.001$) 나타났다. 이는 성희롱 척도가 성희롱 정의에 따른 성립조건에 잘 부합하는 타당한 도구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여자대학생 성희롱 척도가 준거관련타당도에 의해 검증되었음을 시

사하고 있다.

수렴타당도

여자대학생 성희롱 척도가 타당한지 알아보기 위해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성희롱허용태도, 부정적 정서와의 상관을 분석하였고 표 2에 제시하였다.

성희롱 척도와 성희롱허용태도에서는 유의한 정적상관($r=.12, p<.01, r=.23 \sim .26, p<.001$)을 나타내었으며 이것은 성희롱태도가 허용적일수록 성희롱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성희롱 척도와 부정적 정서와의 상관은 모두 유의한 부적상관($r=-.15 \sim -.21, p<.001$)을 나타내어 성희롱 경험이 많을수록 부정적 정서가 높음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성희롱 척도와 성희롱허용태도와의 상관계수, 성희롱 척도와 부정적 정서와의 상관계수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결과

표 1. 성희롱 척도와 준거 변인들과의 상관

구 분	성차에 의한 희롱	성적 강요	덧가성 성적강요	회식자리 성희롱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성희롱 경험 (24번 문항)	.41***	.30***	.26***	.28***	.33***
성적 불쾌감	.77***	.58***	.48***	.67***	.71***

*** $p<.001$.

표 2. 성희롱 척도와 성희롱허용태도 및 부정적정서와의 상관

구 분	성차에 의한 희롱	성적 강요	덧가성 성적강요	회식자리 성희롱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성희롱 허용 태도	.26***	.24***	.26***	.12**	.23***
부정적 정서	-.21***	-.18***	-.15***	-.16***	-.18***

*** $p<.001$ ** $p<.01$

는 성희롱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 제한점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구성 타당도

여자대학생 성희롱 척도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성타당도를 실시하였다. 구성타당도는 앞서 이영은 등(2008)의 연구에서 밝혀진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모형을 다른 표본에도 적용하여 잘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모형의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AMOS 4.0

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Fitzgerald 등(1995)의 연구를 참고하여 상호관계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χ^2 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χ^2 검증은 모형이 변인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지나치게 엄격한 가설을 영가설로 설정하고 있고, 그러므로 아주 쉽게 영가설을 기각하는 경향이 있어 모형의 적합성을 현실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홍세희, 2001; Hong & Cho, 1999). 또한 일반적으로 다른 적합도 결과를 우선적으로

표 3. 모형의 부합지수

χ^2	df	χ^2/df	RMR	RMSEA	GFI	CFI
749.385	220	3.406	.025	.064	.901	.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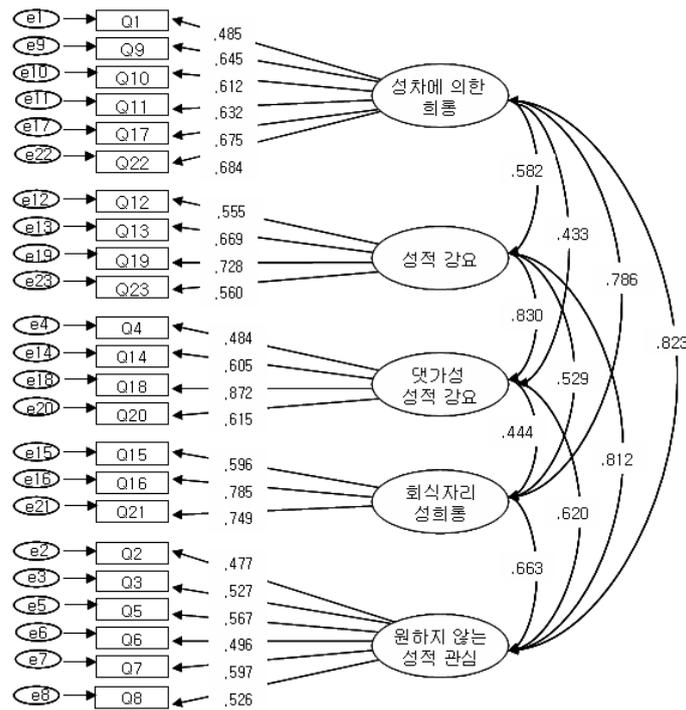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구성타당도)

고려하도록 권장되어지는 점(이순목, 1990; 서수균, 2007 재인용)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 한편 GFI는 .901, CFI는 .880으로 나타났으며, RMR은 .025, RMSEA는 .064(오차범위: .059~.06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부합지수는 이영은 등(2008)이 척도 개발 당시 실시하였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GFI .909, CFI .889, RMSEA .060)와 비슷하게 나타나 일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GFI, CFI는 .90이면 잘 부합하는 모델로 해석하고, RMR은 .05이하이면 좋은 모델,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모델이고 .08이하이면 적절한 모델로 해석한다(이순목, 1990; 홍세희, 2000).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성희롱 척도가 비교적 적절한 수준의 값을 보여 구성 타당도가 지지되었음을 나타내 주었으며 일반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논 의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령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 온지 9년이 되어가지만 대학내에서 성희롱 성립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이영은 등(2008)이 개발한 여자대학생 성희롱 척도의 일반화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타당화 검증을 목적으로 준거관련 타당도, 수렴타당도, 구성타당도를 실시하였다.

첫째, 준거관련타당도 검증을 위해 임의로 추가한 24번문항과 성적 불쾌감을 외적준거로 성희롱 척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준거관련 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시사하였다. 성희롱 질문지 마지막 24번 문항에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문장을 삽입하여 타당도

검증에 이용하였는데 이는 성희롱 관련 질문지 사용시 마지막까지 가급적 성희롱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한 Fitzgerald와 Shullman(1993)의 의견 참고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24번 문항은 성희롱 척도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성희롱 척도가 외적준거인 성희롱 경험 여부를 추론하는데 관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Fitzgerald 등(1995)의 준거타당도 검증 결과와 일치하며, 24번 문항은 실제 상담 현장이나 실태조사에서는 요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성희롱 전체 준거로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성희롱척도와 성적 불쾌감 정도를 살펴본 결과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으며 .48에서 .77의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성희롱의 법적인 정의에 근거하여 성적 불쾌감을 외적준거로 성희롱 척도와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법적인 성희롱 정의에 의하면 성희롱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및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인권위원회법, 제2조 5항). 이는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인 농담이나 접촉이 모두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성적인 언동으로 인해 성적굴욕감이나 또는 혐오감을 느낄 때 성희롱이 성립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 인권위원회의(2005)는 성희롱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상대방이 원치 않았고 불쾌감이 느껴졌는지, 일반여성의 합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적 합의가 있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였는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가해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희롱 여

부가 판단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희롱 척도의 성희롱 행위는 합리적인 여성의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성적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만한 문항들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이에 여자대학생 성희롱 척도와 성적 불쾌감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에 따라 성희롱척도가 성적불쾌감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성희롱 정의와 조건에 잘 부합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내었다.

둘째, 여자대학생 성희롱 척도와 성희롱 허용태도 및 부정적 정서와 관련성을 통해 수렴타당도 검증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성희롱 허용태도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고 부정적 정서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두 척도 모두 상관계수가 높지 않아 성희롱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제한점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한편, 일반적으로 성희롱 피해자들은 분노와 의심, 공포심, 우울증, 자기비하, 죄책감, 수치심, 소외감, 무력감, 혐오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는 많은 연구들(신성자, 1993; 장필화, 1994; 김양희 1995; 김정인 외, 2001; Naomi, 2000)이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셋째, Fitzgerald 등(1995)은 성희롱척도개발에서 다양한 표본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고 그 결과 구성된 요인이 성희롱 행동의 잘 설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영은 등(2008)의 연구에서도 척도개발과정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성희롱 척도의 안정성을 확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최종 결정된 연구모형이 다른 표본에도 잘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성타당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희롱 척도의 부합지수가 비교적 적절한 수준

의 값을 보여 구성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χ^2 검증 결과에 대해 크게 고려하지 않았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이점에 대해 더 논의되고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타당화 검증을 통해 개발된 성희롱 척도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결과적으로 여자대학생 성희롱 척도가 적절한 수준에서 타당한 도구임을 입증하였다.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성희롱에 따른 갈등과 분쟁이 늘어나고, 국가차원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본 척도는 대학기관의 성희롱 예방정책의 교육 자료로 제공될 수 것이며, 성희롱에 관한 연구영역과 상담분야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여자대학생 성희롱 척도의 개발과 더불어 타당도 검증 과정에서도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다른 대상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성희롱의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직장여성의 경우 같은 성인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비슷할 수 있으나, 직장내 학교 조직체계 다르고 업무(일)환경이 다르므로 개발된 성희롱 척도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후속 연구로 직장내 조직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직장내 성희롱 척도가 개발되고 타당성이 검증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작은 수치지만 남학생들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바(이나영, 1999),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부분도 다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공미혜 (1995).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와 영향 요인. *한국여성학*, 11, 110-137.
- 공미혜 (1997). 여대생들의 성희롱 경험과 의식의 차. *한국여성학*, 13(1), 29-50.
- 교육인적자원부 (2005).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관련 10월 24일자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05). 2005년 차별시정 위원회 결정례집.
- 김경신, 김정란 (1999).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변인 분석. *한국가정과학학회지*, 2(2), 1-16.
- 김양희 (1995). 직장여성의 성희롱 경험과 관련정책에 관한 의식. *여성연구*, 13(4), 37-56.
- 김정만, 차석빈 (1994). 환대산업에서의 성희롱에 관한 연구. *산연논집*, 19, 221-235.
- 김정인, 최상진, 손영미 (2001). 성희롱 문제 지각에서 성차 및 성역할 태도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3), 1-22.
- 노충래 (2002). 청소년 성희롱 피해 및 가해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 36-68.
- 나영숙 (1994). 성희롱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수균 (2007). 한국판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1), 239-250.
- 신성자 (1993).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적 성가심의 유형, 부정적 영향, 그리고 피해여성의 개인적 상황적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5, 93-110.
- 여성가족부 (2007). 공공기관 성희롱예방업무 편람. 여성가족부.
- 여성부 (2002). 교육기관(대학) 성희롱 실태조사 보고서. 여성부.
- 이나영 (1999). 학교 내 성희롱의 실태와 규제 방안. *신라대 여성연구논집*, 10, 163-177.
- 이순목 (1990). *공변량구조분석*. 서울: 성원사.
- 이영은, 김영희 (2008). 여자대학생 성희롱 척도개발. *상담학연구*, 9(2), 437-453.
- 이정은 (1994). 직장 내 성희롱 발생과 인지. *중앙행정논집*, 8, 201-223.
- 이혜은 (1998). 성적 괴롭힘에 대한 여대생의 대처양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필화 (1994).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의 모색. *여성학논집*, 11, 113-145.
- 전영실 (1999).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미향 (2004). 남녀대학생의 성희롱 피해, 가해 경험과 영향요인 분석. *이동간호학회지*, 10(3), 291-299.
- 한국여성민우회 (1998). 남녀 직장인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실태 보고서.
- 홍경옥 (2002). 직장 내 성차별 관행과 성희롱 인식에 관한 연구. *비서학 총론*, 14(1), 27-44.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준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2001). 임상심리학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최신 연구방법론: 구조 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매개모형과 잠재평균모형의 분석. 2001년도 한국임상심리학회 워크샵 교재. 임상심리학회.
- Fitzgerald, L. F., Magley, V. J., Drasgow, F., & Waldo, C. R. (1999). Measuring sexual harassment in the military: The Sexual

- Experiences Questionnaire(SED-DoD). *Military Psychology*, 11, 243-263.
- Fitzgerald, L. F. (2003). Sexual harassment and social justice: Reflections on the distance yet to go. *American Psychologist*, 58(11), 915-924.
- Fitzgerald, L. F., Buchanan, N. T., Collinsworth, L. L., Magley, V. J., & Ramos, A. M. (1999). Junk logic: The abuse defense in sexual harassment litigation.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5(3), 730-759.
- Fitzgerald, L. F., Drasgow, F., Hulin, C. L., Gelfand, M. J., & Magley, V. J. (1997).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exual harassment in organizations: A test of an integrated model.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 578-589.
- Fitzgerald, L. F., Gelfand, M. J., & Drasgow, F. (1995). Measuring sexual harassment: Theoretical and psychometric advance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7(4), 425-445.
- Fitzgerald, L. F., Shullman, S. L., Bailey, N., Richards, M., Swecker, J., & Gold, Y. (1988). The incidence and dimensions of sexual harassment in academia and the workpla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 152-175.
- Fitzgerald, L. F., & Shullman, S. L. (1993). *Assessing strategies for coping with harassment: A theoretical/empirical approach*. Paper presented at the Midwinter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Women in Psychology, Tempe, Arizona (cited in Fitzgerald et al., (1995).
- Gruber, J. E. (1992). How women handle sexual harassment: A literature review.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74, 3-9.
- Gruber, J. E., & Bjorn, L. (1982). Blue-collar blues. *Work and Occupations*, 9, 271-298.
- Hong, S., & Cho, Y. (1999). Latent structure of the social interaction self-statement test: An application of hierarchical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Reports*, 84, 1303-1314.
- Mazer, D. B., & Percival, E. (1989). Ideology or experience? *Sex Roles*, 20, 135-145.
- Naomi, M. D. (2000). *Toward theory of sexual harassment: Giving voice to women student's experienc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unseling psychology).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Till, F. J. (1980). *Sexual harassment: A report on the sexual harassment of students*. Washington, DC: National Advisory Council of Women's Educational Programs.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 원 고 접 수 일 : 2008. 6. 17
수정원고접수일 : 2008. 9. 11
계 재 결 정 일 : 2008. 11. 10

The Validation of a Sexual Harassment Scale for Female College Students

Yeung Eun Lee

Woosong Information College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firstly introduce a sexual harassment scale for use in relation to female university students (Yeungeun Lee & Yeunghee Kim, 2008), and secondly, to prove its validity. In order to accomplish this latter goal, the researcher analyzes the scale according to criterion-related validity, convergent validity, and finally cross validity. These three measures of validity, indicate that this measurement tool is indeed a reliable one for the measurement of sexual harassment. In addition, this research confirms both the usability and the potential for generalizing the use of this tool in future work.

Key words : the measurement of sexual harassment, female college students, criterion-related validity, convergent validity, cross validity